■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[별표 12] <개정 2014.7.9>

<u>우수품질인증표시</u>(제30조 관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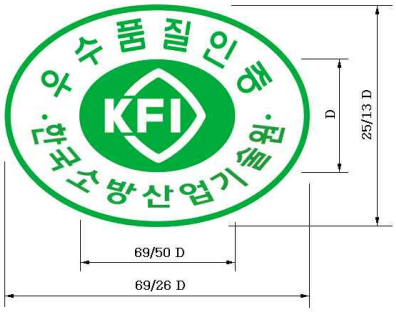

비고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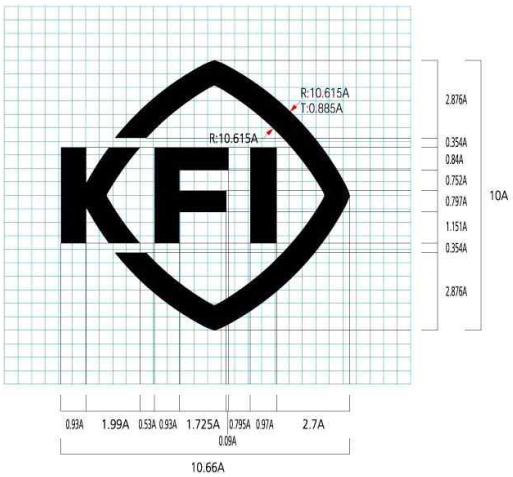
1. 우수품질인증 표시의 크기는 인증을 받은 자가 표시 대상에 알맞게 적용한다.
2. 우수품질인증 표시는 초록색 또는 검은색으로 하며 KFI마크의 도안은 다음과 같이 한다. 다만,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색상을 변경할 수 있다.